#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55

발의연월일: 2025. 1. 31.

발 의 자: 박덕흠 · 최은석 · 이헌승

김성원 · 서천호 · 장동혁

이양수 • 박수민 • 고동진

성일종 • 안철수 • 박상웅

강대식 • 박정하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 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 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심리안정실 설치·운영)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을위하여 특수학교 내 별도의 공간(이하 "심리안정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28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심리안정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과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경우
  - 2.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특수교육교원과 직원(이하 "특수교육교직원"이라 한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

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4(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 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 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특수교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8조의3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 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안정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2. 제28조의4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 장한 자
- ③ 제28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3(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조의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 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 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8조의2(심리안정실 설치・운
	영)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
	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
	서적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내 별도의 공간(이하 "심리안
	정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28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특수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자는 특수교육대상
	자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심리안정실에 「개인정
	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
	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 에게 신고한 경우

- 2.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특수교육교원과 직원(이
  하 "특수교육교직원"이라 한
  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
  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
  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 정 및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 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 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할 것
-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3.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③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 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 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 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

<신 설>

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하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 령에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 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특수교육관련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8조의3제1항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8조의3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 리안정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

제38조(벌칙) <신 설>

<신 <u>설></u>

라 실태를 교육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28조의3 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변 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제38조(벌칙) ① 제28조의4제5항 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 • 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

<신 설>

(생 략)

<신 설>

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행위를 한 자

- 2. 제28조의4제2항제2호를 위반 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 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 ③ 제28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제38조의3(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조의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 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 한 자
  - 2.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열람

<u>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 과・징수한다.